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e - 브로슈어

CONTENTS

- 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개
- ②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접수방법 | 세부일정 | 사업 심사
- ③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Q&A

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개

1

설립현황

설립 목적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과 광역근로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노동단체와의 허브역할 수행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주요기능

- 01 권익보호와 법률지원
- 02 연구조사와 전략사업 발굴
- 03 노동교육과 대시민 홍보·캠페인
- 04 건강 및 산업안전 증진 사업
- 05 사업지원과 네트워킹
- 06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동사업 발굴
- 07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추진사업
- 08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미션과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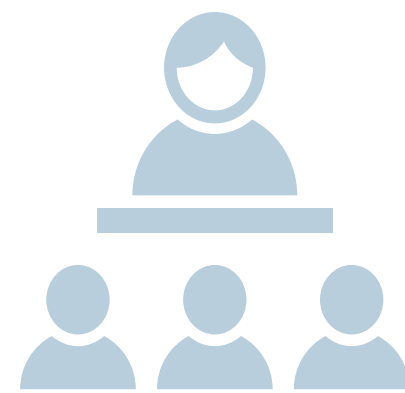
미션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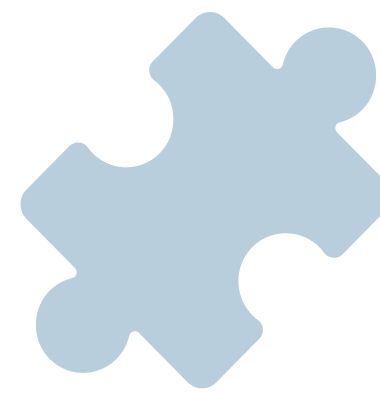
비전

일하는 서울시민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돕고 조직과 조직을 잇는 광역노동허브

3대 목표



취약노동자의 이해대변과
조직화 확대



광역노동허브 도약과
민간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복합전환시대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장과 지지

01

광역노동허브 역할 정립

- 권역별/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체계 및 성과 확산
- 서울지역 노동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
- 서울노동포털 안정화를 위한 운영 및 유지보수
- 서울지역 노동센터 성과공유대회

02

노동복지기반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강화

- 이동노동자쉼터(5개소)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이동노동자 노동복지 증진
- 노동커뮤니티 유형 다각화를 통한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코로나19 이후 서울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와 특징

03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과 사회적 대화 모델사업 추진

-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정 모델 개발 컨설팅
- 중소기업주 교육 및 컨설팅
-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확대

04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방안 체계화로 지원방안 내실화

- 상담과 권리구제지원 연계 시스템 강화로 권익보호 지원대상과 내용 확대
- 맞춤형 연구를 통한 권익보호 실질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노동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 서울노동아카데미 브랜드화와 특성화고 노동교육 강화 및 노동유관기관 연계 공통 교육과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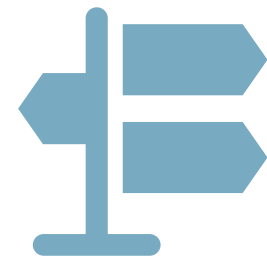
② 2022년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2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의미

시대와 노동형태 변화로 대두된 사각지대 新노동자 맞춤형 지원 필요
(제2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202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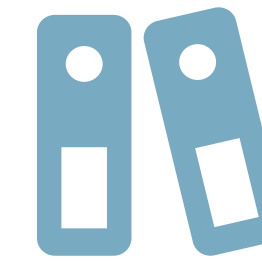
노동자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에서
필요한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동과 지역을 연결한다.

2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문제를
주제로 모일 수 있도록
일상노동네트워크를 확산한다.

3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다층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동사업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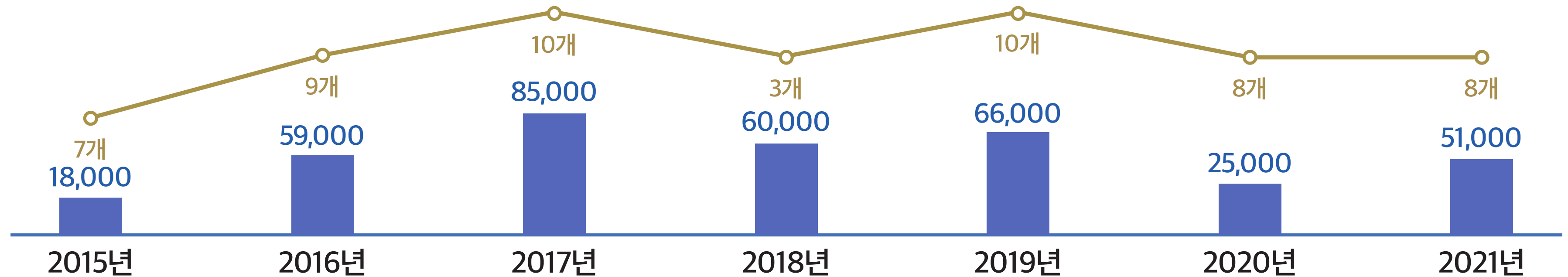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단체 지원사업 소개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사업 추진

-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노동단체 거버넌스 체계 지원
- 민간노동역량 지원과 신규 노동조직 기반 마련
- 소규모 노동자 자조모임 활성화

7년의 경과(2015~2021년)

■ 금액(천원)
○ 지원단체 수



역대 지원단체
(총 39개)

강동희망나눔센터(현 강동노동인권센터) | 강서양천 민중의집 사람과공간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서울지역분회 | 굿프렌즈 | 노동이 아름다운 동작 | 눈맞춤(학습지교사 소모임) | 돌봄을돌봄 | 동아시아국제연대연구모임 | 라이더유니온 | 리빙액트 | 문화예술노동연대 | 미대의 외침 | 버리연대(아름다운 가게 노동조합) | 비정규직없는송파행동 | 서울노동광장 | 서울일반노조 도봉구지부 | 성북구노동권익센터 | 신바람(서대문 청소노동자 품물동아리) | 아름볼(강서양천지역 급식노동자 불링동아리) | 알바상담소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우리동네노동권찾기 | 은평노동인권센터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절미(인쇄인 절대공감 미래비전 프로젝트)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지속가능한 동대문구 노동협치를 위한 네트워크 | 청소년유니온 | 치료사 다모임 | 타투유니온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함께 사는 종로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홍익대학교 인권주간기획단

2015-2017 노동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2018

지역기반구축사업

-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사업 추진 기반 조성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민간 노동단체 지원
 - 지역단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민간노동복지 네트워크 구축

2019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

- 노동자 소모임/신규 노동조합/노동단체 지원으로 세가지 유형 신설
- 씨앗형 - 소규모 노동자 모임 활성화로 노동자 조직화 및 다양한 노동 의제 발굴
- 새싹형 - 신생 노조 안정화 및 역량 강화, 조합원 조직화 지원
- 열매형 -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사업 추진 기반 조성

2020-2021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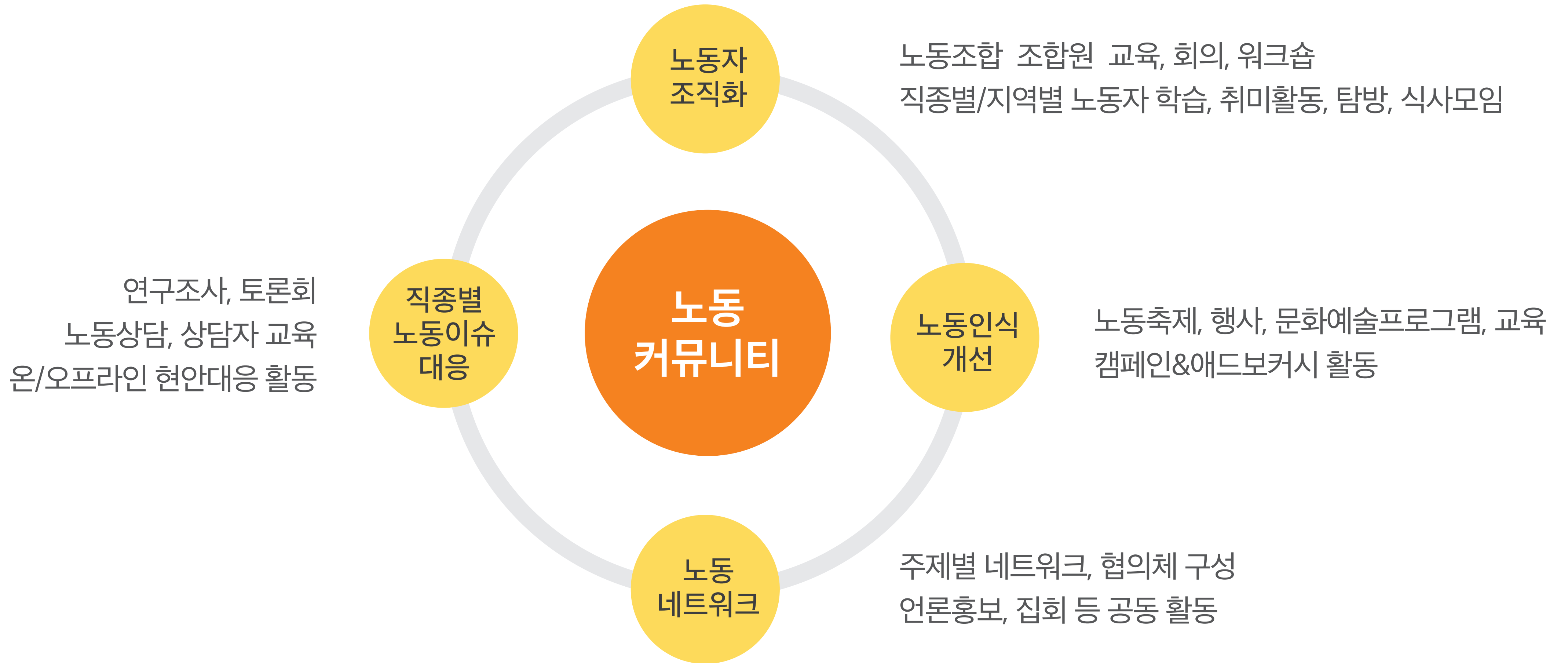
- 소규모 노동자 모임 활성화로 노동자 조직화 및 다양한 노동 의제 발굴
- 소규모 노동사업 확산 및 질적 성장 지원
- 소규모 노동자 모임 및 신생 노동단체 지원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의 특징

- 1 다양한 노동사업 지원을 위해 10가지 지원 주제 구분
- 2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3인 이상 노동자 모임에 사업비 지원
- 3 노동조합, 노동단체, 노동자 소모임, 노동네트워크 등 다양한 조직 지원
- 4 참여단체 간 네트워킹, 자원 연결 매개
- 5 참여단체 실무역량강화 지원 및 포럼 개최 지원
- 6 참여단체와 사업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지원
- 7 사업을 전담하는 단체 활동가 활동비 지원(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활동 사례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작은 노동커뮤니티, 지역 노동커뮤니티 2가지 유형으로 지원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022년 4월 ~ 11월
- ▶ 지원금액 총 2천 5백만원
- ▶ 지원주제 10개 유형 중 택 1

-
- ①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지역 노동환경 변화 ② 취약노동자 현안 대응
 - ③ 기후위기와 노동 ④ 노동안전·보건 ⑤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⑥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⑦ 여성 노동인권 ⑧ 장애인 노동자 노동인권
 - ⑨ 지역 노동네트워크 확산 ⑩ 노동자 자조모임 운영



▶ 지원규모 및 대상

구분		규모	선정	지원대상
작은 노동커뮤니티	지속 지원	3백만원 내 자율 편성	최대 5팀	2020 ~ 2021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참여단체
	신규 지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자 소모임 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노동자 네트워크
지역 노동커뮤니티		1천만원 내 자율 편성	1팀	서울지역에서 노동권익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노동단체 (관할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역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경우 별도 문의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 부설기관

* 구성원의 복리 또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단체

* 서울시, 서울시 노동자지원기관 등 유사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접수 방법

- 1 서울노동포털(www.seoullabor.or.kr) 접속 / 회원가입
- 2 '공모사업 신청' 메뉴에서 내용 입력
- 3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해 첨부
- 4 접수 확인 * 포털 내에서 접수 확인 가능하고 개별 접수 확인 연락 없음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서울노동포털(www.seoullabor.or.kr) 회원가입이 필수임.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세부 일정

일정	날짜	내용
사업설명회	3월 2일(수)	2022년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페이지 오픈
사업 공고 · 접수	3월 3일(목) ~ 17일(목)	서울노동포털에서 접수
사전심사	3월 18일(금)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부 심사위원 1인 진행
서류심사	3월 22일(화)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부 심사위원 1인, 외부전문가 1인 진행
면접심사	3월 24일(목)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부 심사위원 1인, 외부전문가 2인 진행
사업 선정 공고	3월 25일(금)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게시
협약식 & OT	3월 31일(목)	업무협약식, 사업 전체 일정 소개
예산집행교육	3월 31일(목)	예산집행기준 안내
1차 사업비 교부	4월 첫째주	사업비의 70% 교부

세부
일정

일정	날짜	내용
1차 정산	7월 2주까지	4 ~ 6월 집행내역 정산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중간평가 워크숍	7월 21일(금)	사업 경과 보고, 공동 평가
2차 사업비 교부	8월 1주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30% 교부
예산집행교육	10월 중	1 ~ 2차 정산결과 바탕으로 정산보고 세부사항 안내
2차 정산	12월 2주까지	10 ~ 11월 집행내역 정산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최종평가 워크숍	12월 중	사업 결과 보고, 공동 평가, 사업 참여 후기 공유
성과공유회	12월 중	사업 결과 발표회

사업 심사

심사	일정	심사 기준	심사 위원
사전심사	3월 18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요건심사 · 서류 제출 기한 준수 여부 · 구비 서류 적정성 · 종교단체, 정당, 타단체 중복지원 여부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부 심사위원 1인
서류심사	3월 22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 (지속지원의 경우) 전년도 사업실적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부 심사위원 1인, 외부전문가 1인
면접심사	3월 24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역량(책임감, 업무역량), 성인지성 ·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 재확인 ·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 질의사항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부 심사위원 1인, 외부전문가 2인
최종 선정 공고	3월 25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노동포털 및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게시, 개별 연락 	

▶ 사업계획서 작성법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 참여 단체	주관 단체 : 컨소시엄 단체 :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배경)	노동자의 필요와 욕구, 사업의 전체적 배경(공인된 자료를 근거로 활용) <노동사업 전략적으로 기획하기 워크북>p.17-27 참조
사업의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이해관계자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기술 <노동사업 전략적으로 기획하기 워크북>p.31-36 참조
사업의 위험요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분석 <노동사업 전략적으로 기획하기 워크북>p.49-58 참조

사업에 (긍·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외부요인 과 대응 방안 분석(예: 감염병 확산)

양적/질적 자료 활용해 사업의 필요성 증명

이해관계자(사업 및 사업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받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 등)가 누구인지 분석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역량과 자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법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목표	(이 사업을 통해 만들고 싶은 변화)
사업기간	2022. 4 ~ 11(8개월)
사업지역	
사업대상	
신청예산	총 원 (사업비 원, 자부담 원)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1. (사업명) (사업내용) 세부사업2. (사업명) (사업내용) 세부사업3. (사업명) (사업내용)

자부담 필수 아님

세부사업 명칭과 한 줄 이내의 세부사업 설명 기재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법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세부사업명	내용 및 방법	
세부사업	목적	
	일정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명)	내용	1. 1 (세부사업1에 해당하는 활동) 1. 2 1. 3
세부사업2	목적	
	일정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명)	내용	2. 1 (세부사업2에 해당하는 활동) 2. 2 2. 3
세부사업3	목적	
	일정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명)	내용	3. 1 (세부사업3에 해당하는 활동) 3. 2 3. 3

세부사업명, 각 세부사업의 목적, 일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법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일정											
세부사업	세부활동	2022년									
		4	5	6	7	8	9	10	11	12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각 세부사업을 진행할 월(月)에 색 채우기

▶ 사업계획서 작성법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p>▶ 사업 평가 계획</p> <p><노동사업 전략적으로 기획하기 워크북> p60-84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평가 주기 • 모니터링/평가 방법 	<p>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세부 계획 기재</p> <p>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변화 기재</p>
<p>▶ 사업의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 사업 참여자 모집 또는 사업 홍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사업계획서 작성법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추진사업 담당인력 구성			
이름	담당	소속	업무비중(100%)
	모임 추진		
	사업 보고		
	예산·회계		
	(기타)		

본 사업 담당인력을 세분화
해 기재, 예산·회계 담당자는
필수로 지정

▶ 사업계획서 작성법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IV. 사업 예산 계획			
▶ 기간별 사업비 집행계획			
	금액		사업비 전체 합계
사업비 집행 계획	4월 ~ 7월	8월 ~ 11월	
	원	원	원
주요내역			

상/하반기 집행 예정 금액을 나눠서 기재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 분기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편성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법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예산과목별 산출내역					
번호	내용		산출가격		비고
			단가	금액	
1	인건비	일반활동비			
2	사업비				
합계					

예산 계획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해 비목별 예산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법

2022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세부사업별 예산 산출내역						
번호	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산출가격		비고 산출근거
				단가	금액	
1	-	인건비	일반활동비			
2	(세부사업명)	사업비				
3	(세부사업명)	사업비				
합계 (부가세 포함)						

예산 계획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해 세부사업안에서 각 항목별 예산표 작성
 실제 사업비 지출대장은 이 항목으로 구성되므로 정확하게 작성

사업 예산 편성기준

1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 예산계획은 사업계획서 상 명시된 사업 예산 계획에 의거하여야 함.
- 각 사업의 예산항목,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 예산은 운영비(자산취득비), 인건비(일반활동비), 사업비(홍보비, 인쇄비, 물품구입비, 임차료, 여비, 회의비, 교육비, 연구비, 수당)로 세분해 편성할 수 있음.
- 운영비(자산취득비)는 지역노동커뮤니티 유형만 사업비의 15% 이내로 편성할 수 있음.
- 인건비는 본 사업을 전담하는 실무책임자 1인에 대해 서울시 생활임금(10,770원) 기준으로 주당 15시간 내 지급함.
- 인건비와 운영비는 사업비로 전용할 수 없고, 사업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음.
- <2022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매뉴얼> 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예산 편성기준

2) 편성 불가 항목

- 단체 내부 임직원 수당, 상근직원 인건비(일반활동비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단체 내부 보고서용 책자 발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외부 용역으로 진행하는 단체 내부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웹 및 앱 개발, 동영상 제작 등
- 사무용 집기, 공과금, 사무실 임대료,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 기부금, 진료비, 시상(상품권), 선물, 장학금,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 정치, 종교, 유흥, 주류 이용, 미용, 개인적 취미활동에 드는 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외부 용역)하여 지출하는 경비
- 현금 인출 후 지출 불가

③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Q&A

3

1 사업 지원, 신청 관련 질문

Q 사업 신청은 우편 접수도 가능한가요?

A 우편 접수는 불가하고 서울노동포털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이 잘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후 서울노동포털에서 접수 확인이 가능하고 개별 연락은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Q 신청 후 신청내용을 수정하고 싶거나 파일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을 완료한 내용도 접수기간 중에는 "서울노동포털 -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 이력 -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이력 - 내용 확인 후 수정"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2 사업 내용 관련 질문

Q 사업 지역의 범위가 반드시 서울이어야만 하나요?

A 사업 지역은 서울지역이어야 합니다.

Q 지원금에 자부담을 포함해 편성해도 되나요?

A 편성할 경우 금액을 표기해주시되 자부담 편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Q 어떤 내용의 사업이 주로 선정되나요?

A 지원 유형 10개에 속하는 사업 중 필요성과 시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② 사업 내용 관련 질문

Q 지원대상에서 '노동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개인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 민간 노동단체, 노동조합, 노동단체 및 활동가 네트워크, 노동자 자조모임/소모임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Q 타단체와 중복사업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중복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나요?

A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같이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3 사업 선정 관련 질문

Q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A 사전심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부 심사위원 1인, 서류심사는 내·외부 심사위원 각 1인씩, 면접심사는 내부 심사위원 1인, 외부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합니다.

Q 서류심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확장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3 사업 선정 관련 질문

Q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데 면접심사는 대면으로 하나요?

A 면접자 포함 면접장 내부에는 4인의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QR체크인, 체온체크,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Q 면접심사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질문 하나요?

A 단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의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합니다. 또한 단체의 활동 이력, 활동 목표, 사업계획서 상 궁금한 점 등 세부사항을 질문합니다.

4 사업 운영 관련 질문

Q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정산은 총 2회 진행하며 사업비 집행현황을 기록한 정산보고서, 지출대장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영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원본을 우편발송합니다. 1차 검토 후 예산집행규정에 어긋난 항목은 수정, 보완을 진행합니다.

Q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체 사업계획은 변경이 불가하나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세부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변경신청서와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사업 운영 관련 질문

Q 매뉴얼에 명시된 행사에 모두 참석해야 하나요?

A 필수로 참석이 요구되는 협약식, 예산집행교육, 중간/최종평가워크숍, 커뮤니티 데이, 커뮤니티 포럼에 참석해야 하며 컨소시엄 단체의 참석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Q 사업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평가는 제출한 보고서로 진행하되 온라인 평가워크숍을 통해 단체 간 상호평가, 외부전문가의 평가 및 자문을 진행합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 (070-4610-4056/miminaing@labors.or.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